

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524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2004. 7. 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-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

주요골자

- 가.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% 경감(안 제13조 제2항)

개정조례안 : 별 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발췌서 : 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2004. 6. 4~ 6. 24 입법예고, 의견없음

기타참고사항

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구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” 를 “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” 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| 소관실·과·소 | | 세 정 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·소장 성 명 | 세정과장 신 우 균 |
| | 담 당 성 명 | 세정담당 최 돈 행 |
| | 담 당 자 성명·전화 | 이 일 순 (행정2715) |

OO도OO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(안)

OO도OO시·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(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②중소기업진흥및
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
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
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
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
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
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부동
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
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
50을 경감한다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
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2조(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②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제12조(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감면)②-----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|